

인권정보자료실
SAg1.17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분석 관련 자료모음

2005년 8월

인권운동사랑방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분석 관련 자료모음

2005년 8월

인권정보자료실
SAg1.17

방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분석
관련 자료모음**

2005년 8월

인 권 운 동 사 랑 방

< 목 차 >

0. 2006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인권단체 의견수렴(2005.5.10.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 0.1. 인권단체 의견수렴 계획
- 0.2.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개요

1.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관련 자료

- 1.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대한민국 정부)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1.2.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2004.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현)
- 1.3. 200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1.4.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1.5. 200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2004.12.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2.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관련 자료

- 2.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대한민국 정부)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2.2.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길)
- 2.3. 200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3.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관련 자료

- 3.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대한민국 정부)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3.2. 200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4.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관련 자료

- 4.1. 2003년도 세출결산보고서(대한민국 정부)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4.2.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2004.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현)
- 4.3. 200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2004.9. 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5.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관련 자료

- 5.1. 2002년도 세출결산보고서(대한민국 정부)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5.2.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03.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길)
- 5.3. 200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2003.9. 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5.4. 200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2003.9. 법제사법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5.5.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03.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5.6.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2003.11.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인권단체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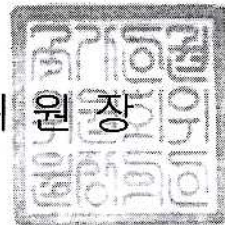
제목 2006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인권단체 의견수렴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에서는 불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2005.5.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인권단체 의견수렴 계획 1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개요 1부. 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인



담당자

서기관

서기관

조영호

예산행정운영과장

전결 05/10

안서호

협조자

시행 예산행정운영과-687 (2005.05.10.)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 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9804

전송 (02)2125-9757 / byh2002@humanrights.go.kr

/ 공개

'06예산(안) 편성관련 인권단체 의견수렴 계획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함
- 아래 의견제출 내용 및 방법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는 인권 단체에서는 2005.5.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증 감	%	비 고
계	19,617	20,406	789	4.0	
인 건 비	7,665	8,317	652	8.5	
기본사업비	6,596	6,727	131	2.0	
주요사업비	5,356	5,362	6	0.1	

- 인건비: 정원 180명 등에 대한 인건비
- 기본사업비: 위원회 청사 임차료 및 인쇄비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 주요사업비: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특별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업

의견제출 내용 (제출 양식 및 붙임 참조)

- 붙임 200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및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0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추계
 - '05년도 사업중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제목 및 그 사유
 - 기타 '06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제출

의견제출 방법

- E-mail (byh2002@humanrights.go.kr)
- Fax : 02-2125-9757 (행정지원국 예산행정운영과)
-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 빌딩 8층 예산행정운영과(100-842)
- ※ 위 방식 중 편리한 방식으로 제출요망

사업내용(개요)

사업제안 사유

소요예산 추계 (생략 가능)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 단체명, 연락처

(붙임)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05년도 예산 규모	2
III. 주요사업비 예산	3
VI.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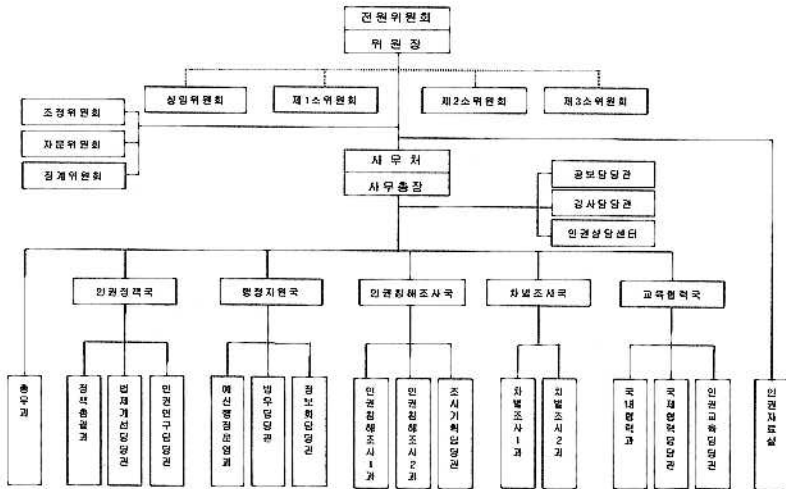
I. 일반 현황

1. 주요 기능

- 인권에 관한 법령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 인권관련 민간단체·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연구와 권고 및 의견 표명

2.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1인(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사무처 : 5국 18과 1소속기관
- 정 원 : 180명
- 조직도



II. 2005년도 예산 규모

1. 총괄

(백만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	증 감	%	비 고
계	19,617	20,406	789	4.0	
인 건 비	7,665	8,317	652	8.5	
사 업 비	11,952	12,089	137	1.1	
·기본사업비	6,596	6,727	131	2.0	
·주요사업비	5,356	5,362	6	0.1	

2. 인건비 : 83억원

- 정원 180명, 전문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 별도정원 3명 등 인건비
- 소요중원(13명) : 지방사무소 12명, 기록물보존요원 1명

3. 기본사업비 : 67억원

-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 35억원
-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 32억원

4. 주요사업비 : 54억원

-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 등 6개사업 21억원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
 -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등 2개사업 4억원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조체제 강화
 - 인권의식 홍보 강화 등 10개사업 29억원

III. 주요사업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4 예산	'05 예산	증감	%
계	5,356	5,362	6	0.1
① 인권의식 홍보 강화	357	357	-	-
②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419	455	36	8.6
③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179	183	4	2.2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	86	86	순증
⑤ 인권순회 상담	114	175	61	53.5
⑥ 인권청문회 운영	34	34	-	-
⑦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882	843	△39	△4.4
⑧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54	39	△15	△27.8
⑨ 북한인권 연구	150	150	-	-
⑩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운영	-	61	61	순증
⑪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962	993	31	3.2
⑫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291	285	△6	△2.1
⑬ 인권관련 단체 지원	150	150	-	-
⑭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904	926	22	2.4
⑮ 인권교육 교재 발간	320	277	△43	△13.4
⑯ 국제인권회의 참가	211	211	-	-
⑰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38	37	△1	△2.6
⑱ APF활동 지원	50	100	50	100.0
*04년 완료 사업 : 조사구제기법개발, 동북아인권워크숍개최	241	-	△241	순감

IV.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 인권의식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취약지역에 대한 진정권 안내 리플릿 등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장기적으로 사회적 취약층과 취약지역을 그룹화, 특성화하여 진정권 안내 확대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357	357	-	-	
○진정안내광고	280	299	19	6.8	
○진정홍보	77	58	△19	△24.7	

□ 기타 참고사항

- '04. 8. 31 기준 차별관련 진정이 전체 진정사건의 7.0%로 지속적인 차별진정권 안내 필요

2.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 사업개요

- 인권관련 정보 및 주요 현안을 널리 알려 국민 인권감수성 향상
- 장애인을 위한 매체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인권정보 확산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감		비고
				%	
계	419	455	36	8.6	
○월간지 발간	401	401	-	-	
○웹서비스	18	18	-	-	
○시청각장애인용 매체발간	-	36	36	순증	

□ 기타 참고사항

-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등에 비치하여 접근성 제고
- 웹진 '인권' 발행을 통해 네티즌 대상 인권정보제공 확대

3.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 사업개요

- 인권, 상담 분야 실무경험자를 전문상담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인권, 상담, 법률분야, 인권위 업무절차 및 특성에 대한 교육 실시로 전문성 제고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179	183	4	2.2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9	23	4	21.1	
○전문상담원 사례급	160	160	-	-	

□ 기타 참고사항

- 전문상담원 자격(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제4조)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원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 사업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 결정사례, 조문별 해석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 인권관련 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올바른 이해 도모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	86	86	순증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	86	86	순증	

□ 기타 참고사항

- 여성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서」 발간(2003년)

5. 인권순회 상담

□ 사업개요

- 지역주민의 소외감 및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인권순회상담 실시
- 지역변호사회, 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권상담, 인권 교육 등 실시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114	175	61	53.5	
○ 인권순회 상담	114	175	61	53.5	

□ 기타 참고사항

- 중소도시 및 소외계층 집단취락 지역 등을 방문하여 상담

6. 인권청문회 운영

□ 사업개요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어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34	34	-	-	
○ 인권 청문회 운영	34	34	-	-	

□ 기타 참고사항

- 청문회 운영 실적
- '03년 17회, '04년 15회, '05년 12회 예정

7.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 사업개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대한 이행점검, 인권현안 TFT 운영,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관련 문헌번역 등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882	843	△39	△4.4	
○ NAP권고안 작성 및 이행점검	28	27	△1	△3.6	
○ TFT 운영	60	22	△38	△63.3	
○ 인권상황실태조사	724	724	-	-	
○ 인권관련 문헌번역	70	70	-	-	

□ 기타 참고사항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 6)의 결의 이행을 위하여, 2001. 5.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NAP 수립 촉구
 - NAP 이행실태 점검 및 국내인권상황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인권 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현 수준 유지 절대 필요

8.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인권관련 법령 개선의 사전협의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의 입법반영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54	39	△15	△27.8	
○ 협의체제 구축 및 운영	37	25	△12	△32.4	
○ 기초자료 축적	17	14	△3	△17.6	

□ 기타 참고사항

-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 2003년 제·개정 법령 1,195건(2003.12.31. 현재 국내 법령 총 3,810건)
 - 2003년 제·개정 조례·규칙 15,742건(2003.12.31.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조례·규칙 총 59,148건)

9. 북한인권 연구

□ 사업개요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의 시각에서 객관적·전문적 연구
- 국내외 북한인권관련 단체·기구 활동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150	150	-	-	
○ 북한인권 연구사업	150	150	-	-	

□ 기타 참고사항

- 2005년 사업 방향
 - 북한인권 실태 조사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 북한인권 정책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수렴

10.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운영

□ 사업개요

- 인권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효율적인 협의체제 구축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	61	61	순증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	-	61	61	순증	

□ 기타 참고사항

- 설립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2004. 3. 17 신설)
- 구성 : 150인 이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촉의원으로 구성
- 주요기능
 - 국가인권정책권고안의 작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이행, 인권관련 정보의 교환 및 공유 등

11.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인권종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교육과정 신설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과 인권감수성 제고
-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962	993	31	3.2	
○정보시스템 운영	698	848	150	21.5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200	100	△100	△50	
○장애인용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	45	45	순증	
○서버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64	-	△64	순감	

□ 기타 참고사항

- 2003년도에 구축된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확보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인권교육 서비스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구축

12.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인권교육 강사단, 경찰·검찰·교정직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에 대한 인권지식 및 감수성 증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인권감수성 제고
- 생활속의 인권의식 저변확대와 다양하고 대중성 있는 인권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대국민 인권의식 신장 및 확산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비고
				%	
계	291	285	△6	△2.1	
○인권교육 5개년계획	45	-	△45	-	
○인권교육 강사인력양성	47	141	94	200.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55	-	△55	-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144	144	-	-	

□ 기타 참고사항

- 인권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대상별 전문인력 양성

13. 인권관련 단체 지원

□ 사업 목표

- 인권관련 NGO들의 다양한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대국민 인권의식 제고
- 인권시민단체별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NGO들의 전문성 제고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 강화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150	150	-	-	
○ 인권관련단체 지원	150	150	-	-	

□ 기타 참고사항

- 대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서 현장경험이 많은 NGO들의 지속적인 활동전개 필요

14.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 사업개요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인권의식 고양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아 인권을 재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인권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확산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904	926	22	2.4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766	766	-	-	
○ 인권문화제	138	160	22	15.9	

□ 기타 참고사항

- 중·장기 문화적 접근을 통한 인권존중의 태도 및 정서 변화 유도
- 출판, 상영, 전시회, 콘텐츠 디지털화 등의 활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권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

15. 인권교육 교재 발간

□ 사업개요

-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인권교육실천사례·문예작품 공모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참여형 인권교육활동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 도모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320	277	△43	△13.4	
○인권교육자료개발	320	202	△118	△36.9	
○인권교육실천사례·문예작품 공모	-	75	75	순증	

□ 기타 참고사항

- 현장 적용성 높은 자료 개발·보급 및 학교현장의 참여 유도

16. 국제인권회의 참가

□ 사업개요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회원국으로서, 연례회의 및 워크숍에 참가, 회의 의결 참여 및 우리의 인권현황 및 활동사항 보고
- 유엔인권위원회, 주요 인권조약감시위원회에 참가, 우리 정부의 국가보고서 관련 의견표명, 모니터링 및 세계인권현황에 대한 연구
- 각종 인권관련 회의에 참가,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영역 확대방안 모색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211	211	-	-	
○ APF 관련 회의	35	34	△1	△2.9	
○ 유엔주관 인권회의	176	139	△37	△21.0	
○ 기타 인권관련 국제회의	-	38	38	순증	

□ 기타 참고사항

- 유엔인권위원회 중, 국가인권기구관련 회의에 참가, 위원회의 인권활동 및 현황보고, 세계인권기구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 세계사회포럼, 아사아시민사회포럼 등 인권관련 회의를 통해 각 인권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국제 인권기구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인권문제 연구분야 확대 및 정책 결정 등에 반영

17.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 사업개요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 위원회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38	37	△1	△2.6	
○ 국가인권기구 교류 및 협력	38	37	△1	△2.6	

□ 기타 참고사항

- 국가인권기구 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
- 선진 인권정책·법·제도 연구자료 확보 및 우수사례를 통한 인권 의식 제고, 업무능력 향상

18. APF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태지역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간 기구로서,
- 워크숍, 연례회의, 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직원교류, APF의 법률가 자문회의의 국제법 연구, 자문 등을 제공하는 APF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고,
- 다른 회원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외국인노동자, 인종차별 등 타 국가와의 유기적 인권문제 해결 노력

□ 2005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증 감	%	비고
계	50	100	50	100.0	
○ APF 활동지원금	50	100	50	100.0	

□ 기타 참고사항

- APF 의장직을 1년간 수행(2004. 9 ~ 2005. 9) 하면서 APF의 사업 활동을 지원, 아·태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한 한국의 의지표명과 함께, 아시아의 인권 리더국가로서 위상 확립
- 아·태지역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관계를 형성하여,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인권문제의 해결에 기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대 대 국 중 기 법 법 감 현 대	통 통 양 획 법	령 령 인 법	비 경 사 예 무 제 사 재 법	서 호 위 원 산 판	실 실 회 회 회 처 부 처 원 소 원	국 부 국 국 공 재 국 조 통 관 국	가 패 무 가 거 정	인 방 정	권 지 총 보 래 경 세 달 계 세	위 위 리 훈 위 원 제	원 원 리 훈 위 원 제	회 회 실 처 회 회 부 청 청 청 청 의
--	-----------------------------------	------------------------------	---	--	---	---	--------------------------------	-----------------	--	---------------------------------	---------------------------------	--

대한민국정부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일반 회 계 】

1. 세 출 예 산 총 괄 표

(단위 : 천원, \$)

장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관	항			
장 130	일반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131	일반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1100 인권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합계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2. 정 원 및 봉 급

(단위 : 인, 천원, S)

세항별	구분	국 원	부 위	관 장	일 반 직										기 능 직	일 반 계 약 직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1	3	1	5	2	27	41	33	29	2	2	32	18	196 (지방사무소 소요증원 등 포함)	4,029,349	182	3,677,786	14	351,563		
합 계		1	3	1	5	2	27	41	33	29	2	2	32	18	196	4,029,349	182	3,677,786	14	351,563		

3. 기타 직보수 활용 현황

(단위 : 인, 천원, \$)

구분 세항별	전문계약직	청원경찰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8	1	9	412,953	9	402,980		9,973
합 계	8	1	9	412,953	9	402,980	-	9,973

4.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단위 : 천원, \$)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장 130	일반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과 131	일반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항 1100	인권행정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1101	기관운영	(\$106,800) 15,285,169	(\$64,000) 14,406,003	(\$42,800) 879,166	
	1. 인건비	8,316,488	7,664,950	651,538	1. 정원 196명(별도정원 3명, 지방사무소 등 13명 포함)
	2. 기본사업비	(\$106,800) 5,797,402	(\$64,000) 5,671,569	(\$42,800) 125,833	
	3. 주요사업비	1,171,279	1,069,484	101,795	
	가. 인권익의홍보강화	357,080	356,910	170	<사업개요> 1.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정안내 및 인권익식 향상을 위한 홍보 <경비내역> 1. 진정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355,580 2. 광고제작회의 운영경비 1,500

(단위 : 천원, \$)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나. 인권의식향상 매체발간	455,136	419,136	36,000	<사업개요> 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월간지 발간·배포 2. 시청각장애인용 위한 매체개발 등 <경비내역> 1. 월간지 발간 401,136 2. 웹서비스 18,000 3. 시청각장애인용 매체 발간 36,000
	다.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182,964	178,964	4,000	<사업개요> 1. 인권 및 상담 실무경험자육 전문상담원으로 위촉,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2. 인권·상담·법률 분야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경비내역> 1.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22,964 2. 전문상담원 사례금 160,000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101,244	-	101,244	<사업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와 조문별 해석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인권관련 담당자 및 일반인의 인권 이해 도모 <경비내역> 1.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101,244
	마. 인권순회상담	74,855	114,474	△ 39,619	<사업개요> 1.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 및 불편을 해소 <경비내역> 1. 인권순회상담 74,855

(단위 : 천원, \$)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1111	인권정책과	(\$26,922) 1,495,275	(\$26,922) 1,318,407	(\$-) 176,868	
	1. 기본사업비	218,406	198,339	20,067	
	2. 주요사업비	(\$26,922) 1,276,869	(\$26,922) 1,120,068	(\$-) 156,801	
	가. 인권전문회운영	33,979	33,979		<사업개요> 1. 관공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 사실 또는 의견 청취 <경비내역> 1. 인권전문회 운영 33,979
	나.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	842,739	882,372	△ 39,633	<사업개요>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대한 이행점검, 인권현안 TFT운영, 인권상황실태조사, 인권관련 문헌번역 등을 통한 인권보호 정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경비내역> 1. NAP 권고안 작성 및 이행점검 27,146 2. TFT 운영 22,048 3. 인권상황실태조사 723,545 4. 인권관련 문헌번역 70,000
	다. 인권법령정비 시스템 구축	38,554	53,717	△ 15,163	<사업개요> 1. 인권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2. 법령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관부서의 입법절차 지원 <경비내역> 1. 협의체 구축 및 운영 24,954 2. 기초자료 축적 13,600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라. 북한인권연구	(\$26,922) 150,018	(\$26,922) 150,000	(\$-) 18	<사업개요> 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연구 2. 국내외 북한인권관련 단체 모니터링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경비내역> 1. 북한인권연구 사업 150,018
	마.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운영	61,105	-	61,105	<사업개요> 1. 인권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체제 구축 <경비내역>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61,105
	바. 인권용어사전제작	150,474	-	150,474	<사업개요> 1. 다양적으로 사용되는 인권관련 용어를 동서양 인권개념 발전사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개념 정립 <경비내역> 1. 인권용어사전 제작 150,474
1121 행정지원국	1. 기본사업비	1,267,802	1,152,962	114,840	
		174,766	191,577	△16,811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항	사항				
	2. 주요사업비	1,093,036	961,385	131,651	
	가.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1,093,036	961,385	131,651	<사업개요> 1.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2.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과 인권감수성 제고 3.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 <경비내역> 1. 정보시스템 운영 848,036 2.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200,000 3. 장애인용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45,000
1131 인권침해조사국	1. 기본사업비	226,129	224,541	1,588	
		226,129	224,541	1,588	
1141 차별조사국	1. 기본사업비	114,537	159,537	△45,000	
	2. 주요사업비	114,537	118,549	△4,012	
	가. 인권침해조사 구제기법 개발	-	40,988	△40,988	* 2004년 완료사업

(단위 : 천원, \$)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
세항	사항				
1151 교육협력국		(\$126,961) 2,181,847	(\$140,907) 2,355,822	(△\$13,946) △173,975	
	1. 기본사업비	(\$19,065) 196,240	(\$20,065) 192,161	(△\$1,000) 4,079	
	2. 주요사업비	(\$107,896) 1,985,607	(\$120,842) 2,163,661	(△\$12,946) △178,054	
	가.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284,650	290,975	△6,325	<사업개요> 1.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특수교육교원 중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인권감수성 제고 2. 인권의식의 서면확대와 생활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적인 인권실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비내역> 1. 인권교육 강사인력 양성 143,242 2. 시민실천프로그램 운영 141,408
	나. 인권관련단체 지원	150,000	150,000	-	<사업개요> 1. 시민단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권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비 일부 지원 <경비내역> 1. 인권관련단체 지원 150,000
	다.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925,919	903,819	22,100	<사업개요>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 2.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인권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인권문화 조성 확산 <사업개요> 1.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768,558 2. 인권문화제 157,361

181

(단위 : 천원, \$)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
세항	사항				
	라. 인권교육교재 발간	277,035	320,110	△43,075	<사업개요> 1. 공무원 및 학생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2. 인권교육 우수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를 통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도모 <경비내역> 1. 인권교육자료 개발 201,700 2. 인권교육우수사례·문예작품 공모 75,385
	마. 국제인권회의 참석	(\$84,634) 211,094	(\$92,580) 210,685	(△\$7,946) 409	<사업개요> 1. APF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인권현황·활동상황보고 2. UN 인권위원회등에 참가하여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세계 인권현황 모니터링 <경비내역> 1. APF 관련 회의 33,785 2. 유엔주관 인권회의 139,049 3. 기타 인권관련 국제회의 38,260
	바.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23,262) 36,909	(\$23,262) 38,072	(\$-) △1,163	<사업개요> 1.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2. 위원회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 <경비내역> 1. 국가인권기구 교류 및 웹백 36,909
	사. 동북아인권 워크샵개최		(\$5,000) 200,000	(△\$5,000) △200,000	* 2004년 완료사업

항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
세 항	사 항				
	아. APF 활동 지원	100,000	50,000	50,000	<사업개요> 1. APF는 아·태지역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국가간 상호협력의 통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 모색 <경비내역> 1. APF 활동 지원금 100,000
국가인권위원회	선 출 합 계	(\$260,683) 20,570,759	(\$231,829) 19,617,272	(\$28,854) 953,487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0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대 현

목 차

I. 예산안 총괄	1
1. 규모	1
2.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	1
II. 세출예산액 내역	2
1. 세항별 예산액 내역	2
2. 경비별 예산액 내역	2
III. 검토의견	4
1.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계상	4
2.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	5
3.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사업(신규)	6
4. 인권법령성비시스템 구축사업	10
5.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운영사업(신규)	12
6. 인권용어사전 제작을 위한 사업(신규)	14
7. 시민실천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으로의 통합 필요성	18
8.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21

2004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I. 예산안 총괄

1. 규모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05억 7,100만원임. 이는 전년도 예산 196억 1,700만원 대비 4.9%에 해당하는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임.

2.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초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2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요구액보다 인건비는 2억 4,000만원 증액되고 사업비는 9,900만원 감액된 205억 7,100만원으로 요구액보다도 1억 4,1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음.

II. 세출예산액 내역

1. 세항별 예산액 내역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예산액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항별 예산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안	증감율(%)
합 계	19,617	20,571	4.9
- 기관운영(1101)	14,406	15,285	6.1
- 인권정책국(1111)	1,318	1,495	13.4
- 행정지원국(1121)	1,153	1,268	10.0
- 인권침해조사국(1131)	225	226	0.7
- 차별조사국(1141)	159	114	△28.2
- 교육협력국(1151)	2,356	2,182	△7.4

2. 경비별 예산액 내역

세출예산액 205억 7,100만원은

인건비 83억 1,700만원

사업비 122억 5,400만원으로,

그 구성비율은 인건비 40.4%, 사업비 59.6%임.

(※ 전년도 구성비율은 인건비 39.1%, 사업비 60.9%이었음)

가. 인건비

인건비는 8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76억 6,5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사업비

사업비는 122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119억 5,200만원) 대비 2.5%인 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권정보 시스템구축(10억 9,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억 3,10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1억 100만원),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운영(6,100만원), 인권용어사전 제작(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주요 사업비에 새로이 계상됨.

Ⅲ. 검토의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1.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에 따르는 인건비 계상

'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3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증가액은 6억 5,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2개소(부산, 광주) 각각 6명의 소요증원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 등에 기인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대상기관인 검찰, 경찰, 군대, 구급·보호시설 등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어 조사의 신속성 확보와 진정인에 대한 면전진정 접수 및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방출장 등에 따른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방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¹⁾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결과, 부처협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예정)하기로 하고,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위한 예산중 인건비를 확보하게 된 것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2003) 218쪽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사무소 설치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진정, 민원상담, 접수 등 지방거주 국민의 접근성이 요구되어 지방조직의 신설 필요성 내지 확대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²⁾등)의 경우도 고려하고, 인터넷, 고속전철 등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을 감안, 지방사무소 설치·확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유선호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의 지방사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던 지방사무소 설치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개정과 예산조치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는 경우 사실상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도 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음.

2.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 있는 인권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문상담원은 그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권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이므로³⁾

2) 감사원의 경우 대전사무소가 설치되어 직원 14명이 근무

3)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간한 229쪽 분량의 "인권상담가이드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4위원회의 조사대상, 동법 제32조(진정서 각하등)의 조류별 해석과 위원회 결정분류에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함께 기술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헌법전문지식이 필

조속히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상담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정규직화는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상담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결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나 '05년도 예산안에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사업(신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 및 조문별 해석, 결정례 등을 수록한 해설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인권관련 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에 1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예산으로 450쪽 분량의 해설서를 3,000부 정도 제작하여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세출예산안명세서 76~77쪽 참조).

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상담사례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적권 지식과 경험을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세 부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을 해설집(여성부)
일반수용비 (201-01)	○ 전문가간담회 회의자료 (8,120*5회*100면)	4,060
	○ 전문가 자문료 (150,000*10명*5회)	7,500
	○ 해설서 원고료 (10,000*5,000매)	50,000
	○ 해설서 제작 (8,120+91*295)*450면	15,734
	○ 해설서 (300,000*4명)	1,200
	○ 교정수수료	500
	○ 해설서 편집료	4,000
	○ 해설서 일러스트레이션	7,500
	○ 책자 발송료 (3,000원*1,500부)	4,500
운영수당 (201-06)	○ 회의참석수당 (70,000+30,000)*10명*5회	5,000
업무추진비 (204-01)	○ 전문가간담회 운영경비 (25,000*10명*5회)	1,250
	합 계	101,244

이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중 해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 조문은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조문별” 해설집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임.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제18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제19조~제29조),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제30조~제50조), 제5장 보칙(제51조~제55조), 제6장 벌칙(제56조~제63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보칙규정 등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설이 필요한 조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부분이 될 것임. 제4장 중에서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와 제32조(진정의 각하등)이 주요대상이 될 것인데, 특히 제30조의 경우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유형, 개념, 판단기준과 결정례 요지를 포함하는 전문적 해설이 필요한 조문으로 전체 해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제32조의 경우에는 조사 및 구제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설의 필요성이나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등)에 대한 해설은 교육용 교재나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인권상담가이드북 등에 사실상 흩어져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를 좀더 보완 정리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업무요령 내지 편람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함.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해석·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을 추진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임.

위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예정에 있는 해설서 원고료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외부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회의운영 등 모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리한 진정사건현황('01.11.26~'04.8.31)을 보면, 접수 11,442건에 사건종결이 10,02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정사건 처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자신들이 해석·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설집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인 해설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전문가에게 막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작성하고, 이를 외부전문가가 감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내부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곤란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전체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주어 완성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셋째, 유사사업인 여성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집⁴⁾ 발간(1천만원)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1억1백만원)은 조문 수의 차이(국가인권위원회법 63개 조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9개 조문), 남녀차별의 단일영역이라는 업무영역상의 차이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과다 계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여짐.

그 세부 산출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단가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고료 1매당 10,000원은 여성부의 3,5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원고료지급 원고매수도 5,000매로 하고 있으나 예정 인쇄면수(450면) 대비 과다 산정되어 있음(통상 인쇄매수의 4배를 원고매수로 산정하므로 450면*4=1,800매가 적정). 그 밖에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집 발간 예산에는 없는 각종 명목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여원을 들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집을 발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추진방법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설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들거나, 아니면 2~3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완성품을 납품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4.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인권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인권법령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관부처의 입법반영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 첫 해인 '04년도 5,400만원에 이어 '05년도 예산안에도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영원 해설, 총 258면, 2003.1 발간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안	증 감	
계	54	39	△15	△27.8
○ 협의체 회의 운영	37	25	△12	△32.4
○ 기초자료 축적	17	14	△3	△17.6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법령에 대한 검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협의회 개최도 없었으며 187개의 인권관련 법령에 대하여 22개 부처에 의견요청한 경우도 일부회신을 포함 11개 부처만이 회신⁵⁾해 오는 등 타 부처의 비협조로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음. 협의체 회의운영 예산액이 '0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32.4% 삭감되어 있음은 이와 같은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음. 사실 수많은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협의를 위한 회의운영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제1호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을 조사·연구검토하여 개선의견이나 권고사항을 통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다 제도화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사업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

으므로 “협의체 회의운영”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은 삭감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5.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운영사업(신규)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⁶⁾에 따라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⁷⁾ 운영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주요기능은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공유 및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임. 구성현황을 보면, '04년도 10월 현재 8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05년도에 관계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의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규편성된 예산은 모두 6,100만원임.

5) 2004. 9 현재

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7) 의장 1인(인권위 사무총장), 지명위원 6인(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위촉위원 17인(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위원장이 위촉)

<세 부 예 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내 역	
일반수용비 (201-01)	협의회 자료인쇄비(전체 및 분과) 외부초청인사 사례금 기타운영경비	15,071 9,450 1,350
운영수당 (201-06)	회의참석수당	16,000
국내여비 (202-01)	정책협의회 참석자 여비	13,334
업무추진비 (204-01)	업무협의 및 회의운영경비	5,400
합 계		61,105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인권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다만, 그 사업범위가 법령정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인권정책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운영성과를 지켜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04년도에 처음 시행된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체 구축이 유명무실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협의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의회의 구성인원이 의장포함 8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위원들이 모여 과연 안전을 효율적으로 다루면

서 당초 기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으므로 그 운영방법 등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6. 인권용어사전 제작을 위한 사업(신규)

이는 인권관련 용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한 인권용어 사전을 발간함으로써 인권분야 어휘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를 시작으로 '07년도까지 총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사업 첫해인 '05년도에는 신규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세출예산안명세서 87~88쪽 참조).

<세 부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일반수용비 (201-01)	o 원고료 (10,000원*400매*10명)	40,000
	o 외국용어번역판 등 인쇄 (8,120원+91원*10)*200면*4회	7,224
	o 번역료 200자*1,000매*40원*4종	32,000
업무추진비 (204-01)	o 전문가회의 운영 (5,000원*25명*10회)	1,250
용역비 (206-01)	o 인권관련어집 연구용역 70,000,000원*1식	70,000
합 계		150,474

<연차별 추진계획>

- '05년도 : 사전 수록내용 및 범위설정, 외국자료번역, 인권관련어집개발
- '06년도 : 카테고리별 대표용어 선정, 용어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 '07년도 : 인권용어 개념정의, 전문가 감수, 사전발간

이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용어사전 제작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인권용어라는 것이 특수성이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헌법이나 형사법의 법률용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인권용어사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권법과 관련한 수많은 국내외 자료, 해설서 등이 존재하고, 이미 외국(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발간된 인권용어사전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므로⁸⁾ 국제화되어 있는 인권특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없이 이를 번역해서 활용되고, 필요시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치면 될 것임. 또한, 우리 헌법과 형사법상 용어 등에 대해서는 기왕에 확립되어 있는 용어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인권용어사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둘째, 인권용어사전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발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권용어사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들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의뢰하거나 인권관련어집 연구용역을 주고, 별도로 외국자료 번역료를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임. 연차별 추진계획 역시 사전발간을 위한 용어선정, 원고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는데 먼저, 인권관련어집을 개발하고, 용어정의 초안을 마련하며, 다시 용어정의를 확정하여 사전을 마련하는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제시하면서 각 연도별로 1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이 사업은 위와 같이 복잡·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권용어사전" 발간사업 전체를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게 하고, 그 완성품을 납품받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함.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 예산안에 계상된 외국 문헌번역, 인권관련어집개발, 전문가 자문, 회의비 등의 예산이 용역비에 포함되게 되어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임.

셋째, 참고로 기왕에 발간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권용어해설집(2004. 9. 강현철 부연구위원, 이주일 세명대 법학과교수)의 경우에는 원고료, 인쇄비 등을 합하여 그 발간비용이 약 2,0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인권용어해설집의 내용을 보면, 헌법, 형사법 및 행정법 등 주로 법령에서 정의되는 인권관련 법령용어를 중심

8) 예컨대, David Robertson, "A dictionary of human rights", London, Europa Publication, 1997

으로 약 400여 인권용어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핵심요지와 함께 상세히 해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용어사전에 수록할 인권용어의 범주는 법령분야, 인권기구 분야, 절차 분야, 이론 분야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전문적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법제연구원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용어사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인권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7. 시민실천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의 통합 필요성

시민실천 프로그램운영은 대국민 인권의식 신장 및 확산을 목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에 총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아래 도표 참조)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은 공모를 통해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 예산안은 총 1억 5,000만원임.(아래 도표 참조)

'03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개발용역비(예산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라기 보다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이 짙어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음. 이는 결국 동일 성격의 사업을 사실상 분산하여 중복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이에 대한 운영과정을 현장 출장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한 행정력 및 각종 부대경비⁹⁾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인권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경우도 심사 및 평가 사례금(300만원) 등 부대경비 및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양자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9) 총 부대경비(1,920만원) : 자료인쇄 및 심사수당(1,400만원), 운영수당(280만원), 여비(140만원), 업무추진비(100만원), 세출예산(안)명세서 103~104쪽 참조

2004년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액
1	데이터베이스 정보인권 지침 개발 및 출판	진보네트워크	7,000
2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및 공연사업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000
3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000
4	성적 소수자 전문 상담센터 기초작업	동성애자인권연대	5,000
5	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차별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건강세상네트워크	7,000
6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아동권보장법률 법률 인법을 위한 캠페인	장애인아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6,000
7	수화로 쉬운 인권비디오 보급	(사)한국장애인협회	7,000
8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방안 모색	서울여성노동조합	7,000
9	공유 라이선스 및 운동모델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통한 정보공유의 권리보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4,000
10	군인의 전화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6,000
11	"장애야 놀자" - 대구시 거주 초중고등학생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지역공동체	6,700
12	부학·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가톨릭여성회관	4,000
13	아동인권관련 생활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인권 지키어"	안산YMCA 아동인권센터	6,000
14	환경관련 인권침해 해외소송사례 연구	환경정의시민연대	5,000
15	원폭피해자 구술 증언기록 사업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5,000
16	ILO 총회 참가 및 독일 주요도시 순회세미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6,200
17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 인권 워크숍-인도네시아, 필리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7,000
18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집약	천주교인권위원회	6,300
19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개 공청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5,000
20	북한인권 국내외 연대활동	(사)좋은빛들	4,000
21	종교인권단체 네트워크 개편사업 및 종교인 인권아카데미	원불교인권위원회	5,000
22	아동보호 국제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연구조사를 통한 기준수립과 기준실현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청소년을위한내외여성센터	7,000
23	인권상담 "365 인권 Hot-Line"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6,000
24	부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부산인권센터	6,000
25	인권학술심포지움-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5,000
26	미군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4,800
합 계			150,000

2004년도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사업 현황

번호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
1	장애인 시험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우 시험차별 개선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000
2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 및 배포 HIV/AIDS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주간사업 및 열린토론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0,000
3	여성장애인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8,000
4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행동	목포경찰서	10,000
5	신문에서 나타난 소외계층 보도사진 모니터	민인련	6,000
6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다문화사회	부산지역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9,000
7	북한이탈주민 자녀 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 "상대를 존중하면, 교실이 넓어져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5,000
8	차별을 넘어 평등한 관계 맺기 "부부재산은 공동의 것"	한국여성의 전화	8,000
9	이주노동자 차별방지를 위한 고용주 인권교육	아시아의 친구들	6,000
10	저소득 실업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cyber캠페인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8,000
11	청소년의 평등노동권에 대한 인식향상과 청소년 노동 차별관행 개선을 위한 창구개설 및 운영	대전여민회	9,000
12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터 매뉴얼 개발 및 통합 놀이터 만들기 조례제정 운동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8,000
13	청소년인권 한을 만들기 운동	군산YMCA	7,000
14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문화교육 및 행동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7,000
15	장애우와 함께하는 인권이야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6,000
16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부산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7,000
합 계			125,000

8.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이는 크게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과 인권의 날 행사를 비롯한 인권문화제로 대별되는 사업으로 '04년도 9억 400만원보다 2.4% 증액된 9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음.

<세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안	증 감	
계	904	926	22	2.4
o인권문화콘텐츠 개발	766	766	-	-
o인권문화제(인권의 날 행사 등)	138	160	22	15.9

먼저 인권문화 콘텐츠개발은 7억 6,600만원으로 영화제작 5억 7,800만원,¹⁰⁾ 인권사진집 1억 500만원, 인권만화집 8,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이 사업의 목적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 개발¹¹⁾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시장영역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함.

10)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 영화(다큐멘터리 형식)의 예산총액(제작비, 비디오·CD제작 및 배포 비용 포함)은 1억 600만원임.

11)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소관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시장성을 전제로 많은 노력과 비용 투입의 결과, 작품회피고 상품화되는 것이지고 볼 수 있으며, 인권침해·차별과 관련된 내용물도 영화·인극·문학속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특히, 2003년 12월 발행(1쇄 3,000부)한 인권사진집인 <눈·밖에·나다>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모습, 개인 및 가족사진 등을 포함한 이들 사진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들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진집을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지인 "인권"지에 인권관련 사진을 연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이러한 문화콘텐츠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교육홍보물 또는 교육교재 등을 제작·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음 인권문화제는 세계인권선언일(12.10)에 즈음하여 인권의 날 기념 행사, 인권관련 영화시사회, 인권사진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법무부에서도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05년도 예산안은 총 500만원¹²⁾을 계상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12) 세계인권선언기념 주간 행사 300만원과 인권홍보 심포지엄 200만원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념품 제작·배포, 사진전시회, 1일의 기념식을 위한 벽화 제작, 각종 공연 등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인권문화제는 지나치게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간소화하면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두 기관의 '03년도 집행내역 참조)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문화제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권의날 기념행사	63	장소대관, 진행 및 공연 사례금, 상패, 시상금, 기념식 벽화제작, 초청장 등, 촬영료, 기념품, 다과, 행사용품 및 기타
인권영화 시사회	31	대관료, 다과
인권사진전	25	대관료, 홍보물, 사진프린트 및 액자제작
계	119	

<2003년도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주간 행사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권옹호 심포지엄	3	정부청사 활용
인권영화 시사회	소요경비 없음	정부청사 활용
수사와 인권 토론회	소요경비 없음	프레스 센터
열린 음악회	소요경비 없음	KBS

2005년도 법제사법위원회소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4. 11.
법제사법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1. 법무부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 세입 및 세출

2. 법제처소관

- 일반회계 : 세출

3. 감사원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헌법재판소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5. 대법원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동기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 세입 및 세출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5. 대법원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 세입 및 세출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4. 10. 2
2. 회부일자 : 2003. 10. 5.
3. 상정일자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4. 11. 17)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
부(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법제처)

제9차 위원회(2004. 11. 18)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
부(헌법재판소·대법원)

제10차 위원회(2004. 11. 19)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감사원·법무부)

제1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2003. 11. 22) 상정·의결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법제처·헌법재
판소·대법원·감사원·법무부)

제11차위원회(2003. 11.23) 소위원회 심사보고·의결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법제처·헌법재
판소·대법원·감사원·법무부)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05년도 예산안	205억7,100만원
2004년도 예산	196억1,700만원
증(△)감	9억5,400만원(4.9%)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6억5,200만원
기본사업비	1억3,100만원
주요사업비	1억7,100만원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05년도 예산안	181억2,300만원
2004년도 예산	162억5,900만원
증(△)감	18억6,400만원(11.5%)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7억 800만원
기본사업비	1억2,600만원
주요사업비	10억3,000만원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대현)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에 따르는 인건비 계상

'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3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증가액은 6억 5,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2개소(부산, 광주) 각각 6명의 소요중원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 등에 기인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대상기관인 검찰, 경찰,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어 조사의 신속성 확보와 진정인에 대한 면전진정 접수 및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방출장 등에 따른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방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¹⁴⁸⁾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결과, 부처협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예정)하기로 하고, 지방사무소를 설치를 위한 예산중 인건비를 확보하게 된 것임.

14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03) 218쪽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사무소 설치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진정, 민원상담, 접수 등 지방거주 국민의 접근성이 요구되어 지방조직의 신설 필요성 내지 확대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¹⁴⁹⁾등)의 경우도 고려하고, 인터넷, 고속전철 등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을 감안, 지방사무소 설치·확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유선호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의 지방사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던 지방사무소 설치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개정과 예산조치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는 경우 사실상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도 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음.

나.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 있는 인권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문상담원은 그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권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이므로¹⁵⁰⁾ 조속히 정규

149) 감사원의 경우 대전사무소가 설치되어 직원 14명이 근무

150)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간한 229쪽 분량의 “인권상담가이드북”에는 국가인권위

직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상담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정규직화는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상담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결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나 '05년도 예산안에 전문상담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사업(신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 및 조문별 해석, 결정례 등을 수록한 해설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인권관련 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도에 1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예산으로 450쪽 분량의 해설서를 3,000부 정도 제작하여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의 세

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동법 제32조(진정서 각하등)의 조문별 해설과 위원회 결정문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함께 기술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헌법등 법률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상담사례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세출예산안명세서 76~77쪽 참조).

<세 부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해설집(여성부)
일반수용비 (201-01)	○ 전문가간담회 회의자료 (8,120*5회*100면)	4,060
	○ 전문가 자문료 (150,000*10명*5회)	7,500
	○ 해설서 원고료 (10,000*5,000매)	50,000
	○ 해설서 제작 (8,120+91*295)*450면	15,734
	○ 해설서 (300,000*4명)	1,200
	○ 교정수수료	500
	○ 해설서 편집료	4,000
	○ 해설서 일러스트레이션	7,500
	○ 책자 발송료 (3,000원*1,500부)	4,500
운영수당 (201-06)	○ 회의참석수당 (70,000+30,000)*10명*5회	5,000
업무추진비 (204-01)	○ 전문가간담회 운영경비 (25,000*10명*5회)	1,250
	합 계	101,244

이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중 해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 조문은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조문별” 해설집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임.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제18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제19조~제29조),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제30조~제50조), 제5장 보칙(제51조~제55조), 제6장 벌칙(제56조~제63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보칙규정 등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설이 필요한 조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부분이 될 것임. 제4장 중에서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와 제32조(진정의 각하등)이 주요대상이 될 것인데, 특히 제30조의 경우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유형, 개념, 판단기준과 결정례 요지를 포함하는 전문적 해설이 필요한 조문으로 전체 해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제32조의 경우에는 조사 및 구제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설의 필요성이나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등)에 대한 해설은 교육용 교재나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인권상담가이드북 등에 사실상 흩어져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를 좀더 보완 정리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업무요령 내지 편

람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함.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해석·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을 추진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임.

위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예정에 있는 해설서 원고료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외부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회의운영 등 모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리한 진정사건현황('01.11.26~'04.8.31)을 보면, 접수 11,442건에 사건종결이 10,02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정사건 처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자신들이 해석·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설집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인 해설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전문가에게 막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작성하고, 이를 외부전문가가 감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내부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곤란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전체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주어 완성품을 납품받도록 하